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19가합302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복단

피고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태호, 유재풍, 박종일, 조성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정규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규

3.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석

담당변호사 최재형

변론 종결2023. 3. 16.

판결 선고2023. 6. 8.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가. 주위적으로,

1) 피고 C(개명 전 이름: E, 이하 개명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C'라고 한다)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8. 접수 제88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1)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4. 체결된 물상보증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30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D'이라 한다)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 2017. 6.

7. 접수 제396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6. 10. 17.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 B의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원고가 투자하고 이에 대한 수익 관련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금

본 계약상 원고가 피고 B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이억 원정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투자 계약기간은 투자금 전액 입금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액 변제한다. 단,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4조 상환방법 및 수익 지급

1. 투자원금은 1년 후 전액변제한다.
2. 투자원금의 수익금은 매월 5일 월 1.7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원고가 지정하는 아래 은행으로 송금한다. 은행계좌번호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A
3.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 상환을 요구할 경우 연 3.6%의 비율로 소급하여 변제한다.

나. 피고 B가 소유하고 있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7. 6. 7. 접수 제39676호로 2017. 6.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6,000,000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위 등기소 2018. 2. 8. 접수 제8897호로 2017. 12.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6673호로 피고 B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상대로 2016. 7. 15.자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1. 피고 B와 H로 하여금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피고 B 및 H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투자금 2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는 H이므로, 원고가 위 투자약정에 기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 B를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계약당사자로 H의 청구지점장인 '피고 B'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 체결 당일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20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위 투자약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역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투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2.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투자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예비적으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7.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경우, 피고 C를 상대로 위 물상보증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가액배상 형태의 원상회복으로 3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투자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7. 6. 7.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12. 14.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원고와 H 및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6. 7. 15.자 투자약정에 기한 것으로, H는 2017. 4. 5.경부터 원고에게 위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 B는 H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점, ③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6. 10. 17.자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것으로, 위 투자약정 제4조 제1항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후 투자원금을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투자금 채권은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투자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 사건 투자금 채권은 이미 채권이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투자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인 2017. 6. 7. 및 2017. 12. 14. 당시에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위 각 시점 별로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 내지 심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재산 처분행위마다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 처분행위 시점 별로 그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이 각각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사해행위로서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7. 6. 7.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2.

14.(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통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물상보증계약의 체결일 역시 2017. 12. 14.로 동일하다)의 각 시점별로 구분하여 피고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다.

② 피고 B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인 2017. 6. 7. 및 2017. 12. 14.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아래 [표1], [표2] 기재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	이 사건 부동산
2	서울 관악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3	서울 성북구 J아파트 K호
4	서울 강동구 L 외 1필지 M아파트 N호
5	고양시 일산동구 O아파트 P호
6	고양시 일산동구 O아파트 Q호의 1/2 지분
7	화성시 R아파트 S호
8	화성시 R아파트 T호
9	화성시 R아파트 U호
10	화성시 V아파트 W호의 1/2 지분
11	화성시 X 외 3필지 Y아파트 Z호
12	화성시 X 외 3필지 Y아파트 AA호
13	화성시 AB아파트 AC호
14	화성시 AB아파트 AD호
15	화성시 AB아파트 AE호
16	화성시 AF아파트 AG호
17	청주시 흥덕구 AH 외 3필지 AI아파트 AJ호
18	청주시 흥덕구 AK건물 AL호
19	충주시 AM아파트 AN호
20	충주시 AO아파트 AP호
21	구미시 AQ아파트 AR호
22	구미시 AQ아파트 AS호
23	구미시 AT AU호
24	구미시 AV아파트 AW호
25	구미시 AX건물 AY호
26	구미시 AX건물 AZ호
27	구미시 AX건물 BA호

1	이 사건 부동산
28	청주시 서원구 BB 토지의 1/2 지분
29	순창군 BC 토지
30	순창군 BD 토지

1	이 사건 부동산
2	화성시 R아파트 S호
3	화성시 R아파트 T호
4	화성시 R아파트 U호
5	화성시 V아파트 W호의 1/2 지분
6	화성시 X 외 3필지 Y아파트 Z호
7	화성시 X 외 3필지 Y아파트 AA호
8	화성시 AF아파트 AG호
9	청주시 흥덕구 AK건물 AL호
10	충주시 AM아파트 AN호
11	충주시 AO아파트 AP호
12	구미시 AQ아파트 AR호
13	구미시 AQ아파트 AS호
14	구미시 AT AU호
15	구미시 AV아파트 AW호
16	구미시 AX건물 AY호
17	구미시 AX건물 BA호
18	순창군 BC 토지
19	순창군 BD 토지

③ 피고 B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인 2017. 6. 7. 및 2017. 12. 14.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서울 관악구 I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서울 성북구 J아파트 K호, 서울 강동구 L 외 1필지 M아파트 N호, 화성시 AF아파트 AG호, 청주시 흥덕구 AH 외 3필지 AI아파트 AJ호, 청주시 서원구 BB 토지, 순창군 BC 토지 및 BD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 가액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결과 자료(갑 제12, 14호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일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더라도, 2017. 6.경 및 2017. 12.경 무렵에 이루어진 소수의 거래 사례에 따른 매매가격을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결과 자료만으로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B가 사해행위 시점인 2017. 6. 7. 및 2017. 12. 14.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자 내지 전세권자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고 B가 각 임차권자 내지 전세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내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상당액을 제외하면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재산가치는 사실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인 2017. 6. 7. 및 2017. 12. 14. 당시 피고 B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임차권자 내지 전세권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내지 전세권설정계약 등이 체결된 정확한 시점 및 피고 B가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내지 전세금보증금 반환채무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⑤ 한편, 위와 같이 피고 B가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 중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확인되는 부동산도 존재하나(서울 관악구 I토지 및 그 지상 주택, 이 사건 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AH 외 3필지 AI아파트 AJ호, 청주시 흥덕구 AK건물 AL호), 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 B가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 수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기재만으로 피고 B가 2017. 6. 7. 및 2017. 12. 14.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구체적인 액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 별로 피고 B의 소극재산 내역 및 그 구체적인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 B가 위와 같이 2017. 6. 7. 및 2017. 12. 14.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들의 가액 합계를 초과할 정도로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B가 2017. 6. 7.경 및 2017. 12. 14.경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진웅

판사이유섭

판사백송이

별지

1) 원고는 2019.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금액은 청구원인이 동일하나 지연손해금 액수만을 달리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주위적·예비적 병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역시 다음과 같이 설회하기로 한다.